

의안 번호	제3550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1월 15일 한종우 의원
- 나. 상 정 일 자 : 2024년 12월 13일
- 다. 의 결 일 자 : 2024년 12월 16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동시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과 김포시민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입주자 등의 책무 및 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근거 신설(안 제4조, 제5조)
- 나. 그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4. 검토의견 : 생략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부 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“관리종사자”의 의미는 「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, 관리직원, 경비원, 미화원, 시설관리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의미하고 있음.

따라서, 명칭 확대로 인해 “관리종사자”에 포함되는 여러 타 직군에 비해 경비원의 경우 실제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, “경비원”이라는 기존 명칭에서 “관리종사자”로 용어가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, 명칭의 의미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 소홀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함.

11.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